



‘청렴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’
‘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연속 최상위기관’

2015년 CLEAN 통계청 정착을 위한

반부패·청렴대책 추진계획(안)

2015. 3.



통 계 청
감사담당관실

차 례

I. 공공기관 반부패·청렴 평가 체계	1
II. 2014년 통계청의 청렴수준	2
1. 부패방지 시책평가	2
2. 기관 청렴도 측정	4
III. 2015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방향	6
1. 환경분석(SWOT)	6
2. 추진방향	7
3. 수립절차	8
IV. 2015년 부문별 세부추진계획	9
1. 반부패 인프라 구축 운영	9
2.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	16
3.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개선	20
4. 청렴의식 문화 개선	23
5.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	30
【붙임】	
1.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(2015년도)	35
2.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관련 양식	36

I. 공공기관 반부패·청렴 평가 체계



□ (부패방지 시책평가) 반부패·청렴정책 정착 촉진 및 국가 전반적인 청렴수준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('14년 254개)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부패 방지 시책과 성과를 평가(권익위)

☞ 2015년도 중점 평가 내용

- '부패방지 핵심 과제'에 대한 기관별 개선 노력 평가 강화
-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·청렴정책 기반 공고화
- 수범사례에 대한 환류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도입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

□ (기관 청렴도 측정) 공공기관('14년도 724개)에 대한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 자료를 기초로 측정·언론보도(권익위 주관)

☞ 2015년도 중점 평가 내용

-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패취약업무를 신규 발굴,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.
- 전 공공기관 부패사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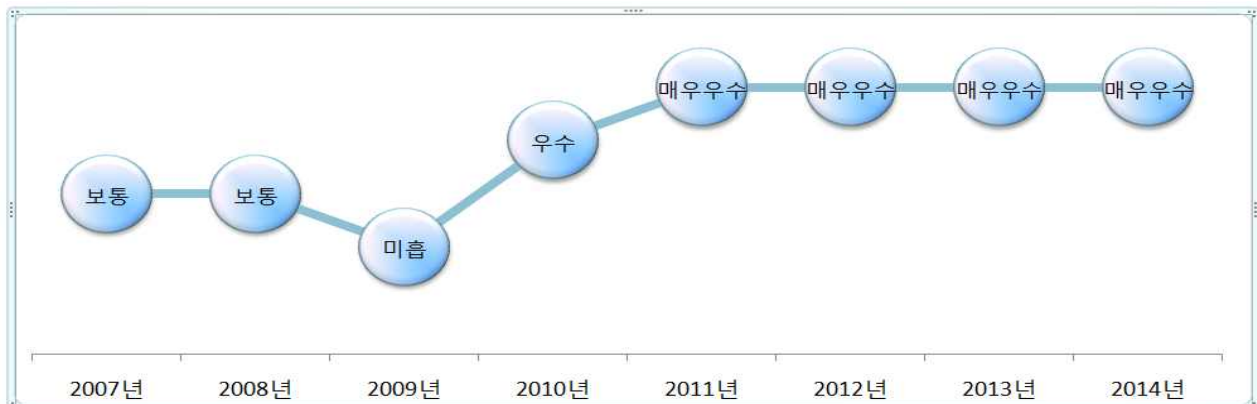
Ⅱ. 2014년 통계청의 청렴수준

1 부패방지 시책평가

2014년도 「부패방지 시책평가」 총평

- 2014년도 우리 청의 「부패방지 시책평가」 결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'I 등급(매우우수)'으로, **4년 연속 '매우우수'기관**으로 자리매김
 - (강점) 평가지표 43개중 평가가 우수한 지표는, 청렴인센티브제도 운영, 자체감사 활성화, 산하기관 반부패·청렴수준 제고, 행정절차의 투명성, 청렴옴부즈만 운영,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, 청렴교육 실시,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, 행동강령 자체점검, 공익신고·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등이며,
 - (약점)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표는,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,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,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·노력(설문평가),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부문으로 나타남
 - (애로) 우리청의 경우 부패유발요인 제거·개선과 관련하여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이나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분야는 기관의 업무 특성상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 - (향후) 행동강령 우수제도 도입,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·추진, 청내 부서장급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한 기관의 반부패 경쟁력 향상

연도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(2007년~2014년)



■ 연도별 「부패방지 시책평가」 현황

평가과제명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
	부패방지 시책평가					반부패경쟁력평가	부패방지시책평가	
총합 (순위)	보통	보통	미흡 (24/39)	우수 (4/39)	매우우수 (1/39)	매우우수 (2/16)	매우우수 (2/16)	매우우수 (2/14)

■ 2014년도 단위과제별 평가 현황

평가영역	평가부문	단위과제	비고	
A. 반부패 의지·노력 (90%)	① 반부패 인프라 구축 (0.15)	1-1.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(0.20)		
		1-2. 자체감사 활성화(0.25)		
		1-3. 부패처벌 강화(0.25)		
		1-4.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(0.30)		
	② 정책 투명성· 신뢰성 제고(0.15)	2-1.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(0.40, 설문)		
		2-2.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(0.40)		
		2-3. 청렴시민감사관 운영(0.20)		
	③ 부패유발요인 제거·개선 (0.35)	3-1.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(0.25)		
		3-2.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(0.25)		
		3-3.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(0.25)		
		3-4.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(0.25)		
	④ 공직사회 청렴의식· 문화 개선(0.20)	4-1.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·노력(0.20, 설문)		
		4-2. 청렴교육 활성화(0.30)		
		4-3.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(0.50)		
	⑤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(0.15)	5-1.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(0.50)		
		5-2.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(0.50)		
		5-3.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(가점)		
	B. 부패방지 성과(10%)	① 청렴도 개선(0.30)	1. 청렴도 개선(100) (설문)	
		② 부패공직자 발생(0.70)	1. 부패사건 발생 예방(100) (통계자료)	
	C.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	감점 지표	1.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(총점의 10% 까지)	

2 기관 청렴도 측정

2014년도 「청렴도 측정 평가」 총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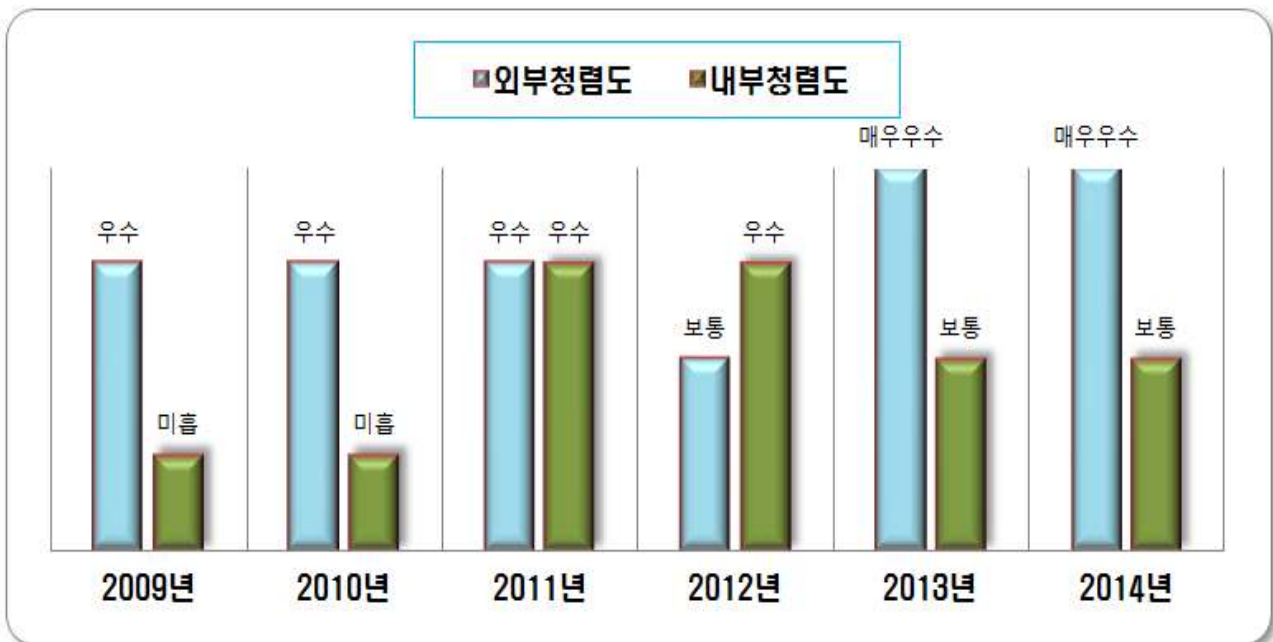
- 2014년도 우리 청의 「종합청렴도」 등급은 'I 등급(매우우수)'으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'I 등급(매우우수)' 기관으로 선정
 - 중앙행정기관(42개) I 유형(2,000명이상) 17개 기관 중 1위
 - (종합청렴도)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.02점으로 전년에 비해 0.31점 하락하였으며, 이는 외부청렴도(8.76점→8.26점), 정책고객평가(7.75점→7.55점)가 하락한 결과임(내부청렴도는 전년도 수준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전체기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)
 - 청렴도는 전체기관(평균 7.78점) 및 중앙행정기관(평균 7.60점)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('14년 청렴도는 7.78점으로 전년대비 0.08점 하락)
 - (외부청렴도) '부패지수의 금품·향응·편의 제공 간접 경험'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냄
 - (내부청렴도) '사업비 위법/부당집행 규모', 인사업무의 '직접경험 금품 제공빈도', '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'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음
 - (정책고객평가) 7.75점으로 전년보다 0.2점 하락함

연도별 청렴도 측정 결과(2009~2014년)



▣ 연도별 통계청 「청렴도 측정」 현황

구 분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
		2차기관				
종합청렴도	8.50	8.63	8.83	8.19	8.33	8.02
(순위)	(24/39) 보통	(10/24) 보통	(2/24) 매우우수	(6/25) 우수	(1/25) 매우우수	(1/17) 매우우수
외부청렴도	9.27	8.82	9.09	8.54	8.76	8.26
(순위)	(4/39) 우수	(6/24) 우수	(2/24) 우수	(9/25) 보통	(1/25) 매우우수	(1/17) 매우우수
내부청렴도	7.09	8.10	8.52	8.21	7.97	7.96
(순위)	(36/39) 미흡	(17/24) 미흡	(4/24) 우수	(7/25) 우수	(12/25) 보통	(9/17) 보통
정책고객평가	-	-	-	7.77	7.75	7.55
(순위)	-	-	-	(8/25) 우수	(1/25) 매우우수	(2/17) 매우우수



Ⅲ. 2015년 반부패·청렴대책 추진방향

1 환경분석

□ 조직적 차원 · 환경적 차원



-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 의지
- 소속기관의 적극적인 청렴활동
- ‘e-감사’ 시스템 구축 및 운영



- 구성원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 부족
- 청렴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및 업무연속성 부족
- 비공무원 증가 및 유연근무제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 증대



- 정부의 강력한 청렴 정책
-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 활동 강화



- 계약, 용역 업무 증대로 외부업체의 관심도 증가 및 투명성에 기대수준 상승

□ SWOT 분석

강점·기회(OS)	강점·위협(ST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기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● 부패신고시스템 외부 전문업체 위탁 운영으로 내부신고 활성화 ● 청렴활동 인센티브제도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국장급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●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운영 강화 ● 청렴옴부즈만 제도 활성화
기회·약점(OW)	위협·약점(TW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청렴문화 확산 및 내제화를 위하여 청렴 교육확대 강화 ●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 징계 처분자 청렴전문교육 이수 법제화 ●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실천 유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계약업무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관의 이해관계자에게 청렴안내문 발송 ● 고위공직자, 계약관리 사무관 및 담당자 청렴서약서 작성 ● 청렴업무 전담팀 운영

2 추진방향

반부패 청렴활동 정착으로 CLEAN 통계청 구현

추진방향

- 클린 기관 정착을 위한 부패유발요인 개선
-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의식 개선
-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확대 및 강화

추진과제

반부패 인프라 구축 운영

- 청탁등록시스템 운영
- 클린신고센터, 핫라인 운영
-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
- 청렴인센티브 제도 확대 운영

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

- 업무처리의 투명성 · 공정성
- 정보공개 활성화
-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
-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

부패유발유인 제거 및 개선

-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
- 부패영향평가 실시
-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
-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

청렴의식 식문화 개선

-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
-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
- 청렴교육 실시
-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

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활성화

- 행동강령 인지도 평가
-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
- 공익신고 활성화
- 복지부정 신고 활성화

3 수립절차

<계획(안) 수립절차>

통계청 반부패·청렴대책 자체추진계획 수립은 청렴업무 담당자의 계획(안) 수립, 계획(안)에 대한 ‘청내의견수렴’, 자문(청렴 옴부즈만, 감사자문위원회), ‘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단’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최종 결재 후 시행



IV. 2015년 부문별 세부추진계획

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운영

◆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 마련

⇒ 반부패 청렴 정책추진단 운영, 알선청탁신고시스템 운영, 클린신고센터, 핫라인, 청렴우편함 설치, 익명신고시스템 도입, 청렴마일리지제도, 부패공직자 현황 관리, 소속기관 대상 반부패 시책 평가 실시,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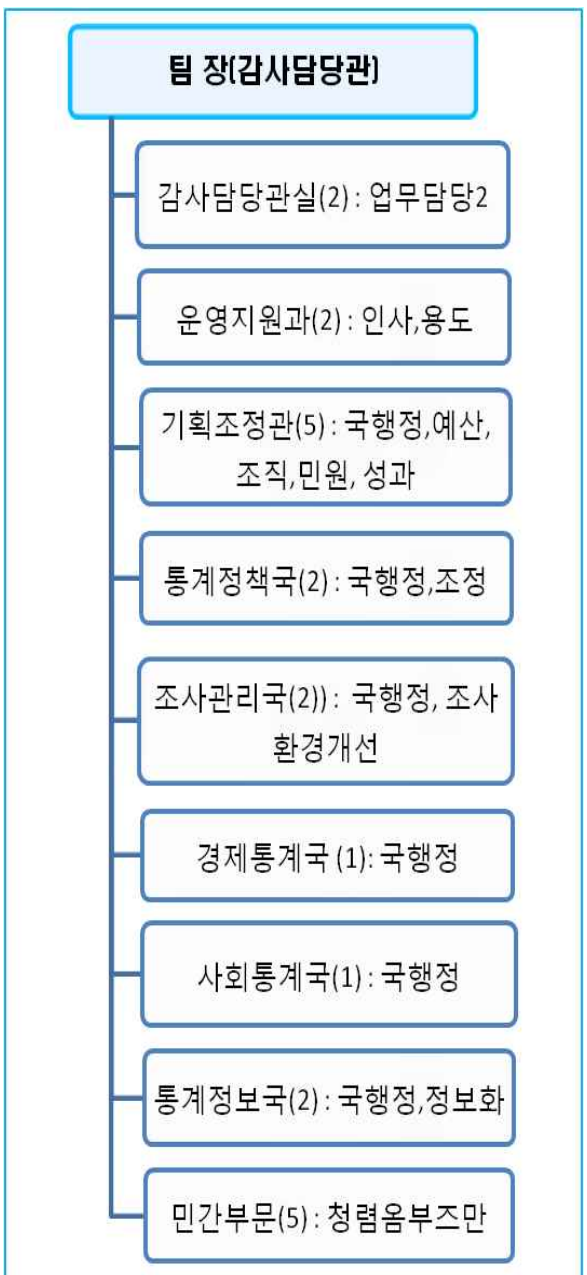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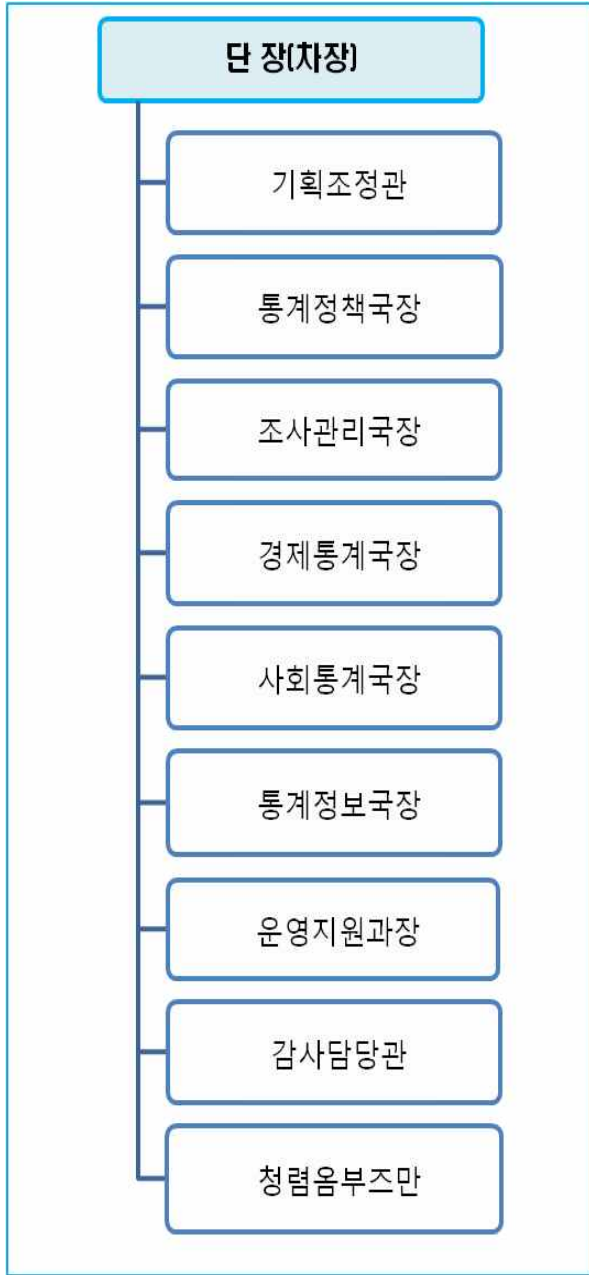
반부패 청렴 정책추진단 운영

- 운영목적: 우리청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의 실효성 및 완성도 제고
- 기능
 -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진단 및 분석
 - 부패방지 핵심과제 발굴·선정, 추진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이행수단 확보
 -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심사·권고 및 추진결과 효과성 평가
 -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취약점(Red-point) 발굴 및 대응방안 제시 등
- 추진단
 - 단장: 차장
 - 단원: 기획조정관, 통계정책국장, 조사관리국장, 경제통계국장, 사회통계국장, 통계정보국장, 운영지원과장, 감사담당관, 청렴옴부즈만
- 「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실무T/F팀」 운영
 -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단의 실효성 제고 및 추진점검회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구성(필요 시 지방청 실무자 포함)
- 추진일정: 연중
 - “2015년도 청렴마일리지 운영계획(안)” 검토 및 자문 : ‘15.1월
 - “2015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(안)” 검토 및 자문 : ‘15.3월

반부패·청렴 정책 추진단

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단

추진단 실무 T/F팀



※ 필요시 지방청 감사팀 및 지방사무소 실무자 회의 병행 실시

알선청탁신고시스템 운영

- 운영목적
 - 청탁받은 공직자에게는 청탁거부 명분을 주고, 청탁자는 청탁기록 관리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는 사전 예방적 장치
 - 청탁등록을 청탁거절로 간주, 사후 책임면책과 선량한 공직자 보호
- 운영시기: '11. 10. 17이후(시스템 구축 완료)
- 운영시스템: 업무포털(UBIS) → e-감사 → 알선청탁신고
- 시스템 등록메뉴: 제목, 청탁자, 등록자, 부서명, 등록일시
- 주요 등록(청탁)내용
 - 인사관리에 관한사항(임용, 승진, 전보, 상벌, 비공무원 채용 등)
 - 예산에 관한사항(예산 및 기금 운용, 구매, 재산매각, 용역, 공사 계약 등)
 - (등록방법) 청탁 받은 즉시(30분 이내) 시스템에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등록

<등록 방법>

- 청탁자 인적사항
 - 청탁자의 성명, 직업 및 직장(직위) 등을 기재
- 제목: 청탁과 관련된 간단한 제목을 지정하여 입력
 - ※ 예시): ○○구매 계약 관련 청탁
- 청탁내용: 6하 원칙에 의거 기재
 - 청탁자가 부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주관적 판단(청탁내용 가감) 없이 청탁내용 그대로 등록
 - ※ 청탁등록 일시는 청탁사실 등록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
- 첨부파일: 청탁과 관련된 관련자료 등이 있을 경우 등재

- 청탁등록시스템에 대한 자체 교육 및 홍보
 - 교육: 청렴교육*시 포함 실시
 - * 신규임용자 교육, 자체감사관 청렴교육 등
 - 홍보: 기관 보유 전광판을 통한 '부정청탁 금지' 송출
- 추진일정: 연중

클린신고센터 운영

- 운영목적: 통계청 소속공무원의 부조리/불친절 신고, 행동강령 신고, 고충민원 등 접수·처리
 - ※ 부조리신고: 「클린신고센터」를 통해 접수되는 통계청공무원의 “부조리·불친절”, “금품 등 반환·거절”, “행동강령위반(상담)” 및 “내부공익”에 관련한 사항 신고
- 운영근거: 「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」(통계청훈령 제383호, 2014.12.3.)
- 운영시기: 홈페이지('05. 11월 이후), e-감사('11년10월 이후)
- 운영매체: 통계청 홈페이지 및 내부인트라넷(e-감사)
 - 통계청 홈페이지 → 민원과 소통 → 클린신고
 - 업무포털(UBIS) → e-감사(감사정보시스템) → 클린신고
- 부조리신고 포상금품 등 지급기준(훈령 제16조 관련)
- 추진일정: 연중

핫 라인(Hot-Line) 운영

- 운영목적: 조직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
- 신고시스템: 업무포털(UBIS) → e-감사(감사정보시스템) → 핫라인
- 신고 대상
 - 불합리한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, 부당한 업무지시 등
 - 무기계약직 운영상 위법 부당한 내용(채용, 무기직 전환 등)
 - 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및 기타 부조리 관련 사항
- 신고 방법: 기명 또는 무기명 가능
 - ※ 기명 신고 시 ‘클린신고센터 운영규정’에 따라 포상 가능
- 운영시기: '11. 9. 14.이후
- 기타: 신고인의 신분보장 철저(신고내용은 감사담당관만 볼 수 있음)
- 추진일정: 연중

청렴우편함 설치

- 운영목적: 직장생활에서 당하는 억울함/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함
- 신고 방법: 청렴우편함을 이용(익명보장)
- 설치 장소: 본청(10,12,16층 휴게소), 지방청(본부 및 사무소)
- 신고 대상
 - 부당한 업무지시, 업무분장의 부당성 등
 - 초과근무, 행동강령 위반행위, 건의사항 등
- 우편함 열쇠 및 관리: 감사담당관실(본청, 교육원, 개발원)
지방청감사팀(본부 및 사무소)
- 운영시기: '15. 3월
- 기 타: 신고내용은 자체 확인을 거쳐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(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)

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운영

- 운영목적: 반부패시스템 전문회사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익명성 보장과 내부고발제도 활성화
- 신고시스템: 레드휘슬 헬프라인(신고→전달→처리)을 이용
- 신고 대상
 - 불합리한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, 부당한 업무지시 등
 - 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및 기타 부조리 관련 사항
- 신고 방법: 통계청 홈페이지 헬프라인 접속 후 신고(익명보장)
- 운영시기: '14. 4월 중
- 기타: 신고내용은 자동으로 암호화되어 처리되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
- 추진일정: 연중

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

- 운영목적: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활동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
- 운영근거: 통계청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(예규 제133호, 2014.3.26.)
- 인센티브

〈감사담당관실〉 올해의 청렴인 및 청렴부서 선정, 청렴유적지 탐방

① 청렴마일리지 개인별 우수자,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(12월)

- 최우수(1명): 올해의 청렴인, 청장표창 및 포상금
- 우수(5명) 및 장려(10명): 포상금
- 최우수 부서(1개) 및 우수 부서(3개): 포상금

② 청렴사적지 탐방('15.5월경)

- 청렴마일리지 최우수 및 우수자: 6명
- 지방청 감사팀 중 청렴에 기여한 자: 지방청별 1명
- * 자체감사 유공자와 합동으로 실시

〈성과관리팀〉 부서 청렴마일리지 성과평가 반영(성과관리시행계획)

부서 실적 가 점	상위 20% 이상 부서 + 0.2	상위 21%~50% 이내 부서 + 0.1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 과·팀 평균점수로 순위를 부여 후 성과평가에 반영(지방청은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)

- 추진일정: 연중

<전년대비 변경사항>

■ 신설

- 클린신고센터 활용(3/회당)
- 부패방지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추진한 사례(기획운영자 10점, 참여자 2점)
- 감사결과 우수사례 선정(지방청 선정 3점)

■ 삭제

- 언론보도(타기관 홈페이지), 민간협력체 운영, 청렴캠페인(권익위 주관)
- 청렴동아리 참여(삭제, 청단위 통합 운영 예정)

■ 청렴마일리지 가점기준 조정

- 언론보도(중앙일간지 30점→10점), 행동강령상담(3점/회당→1점/회당), 행정규칙 조문개선 제출(5점→1점),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(5점→8점)
- 행동강령 인지도(80점이상: 3점, 60점이상: 2점), 행동강령 금품반환(30점→20점), 청렴캠페인(자체주관 3점→2점, 운영자 10점→5점), 감사결과 우수사례(본청 채택: 10점→5점)
- 반부패청렴포상실적(통계청: 포상별 점수 조정, 외부기관 30점→20점)

⇒ 「2015년도 통계청 청렴마일리지 운영계획」 알림('15.2.5.)

부패공직자 현황관리

-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·제출(반기 1회)
 - 입력사항: 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, 처분변경사항, 징계총괄표 등
-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자료 입력·제출(반기 1회)
 - 입력사항: 행동강령 적발현황
-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입력
 - 입력사항: 비위면직자 발생건수,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건수
- 제출(입력) 사이트: 제로미(<http://cry.acrc.go.kr>, 국민권익위원회)
- 추진일정: '14. 2월 및 7월

소속기관 대상 반부패 시책 평가 실시

- 평가목적: 우리청의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및 청렴수준 제고
- 평가근거
 - 2015년도 통계청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
 - 2015년도 자체감사 및 청렴활동 실태평가 포상계획
- 평가대상: 소속기관 7개(2개 원 및 5개 지방통계청)
- 평가방법: 소속기관별로 제출한 청렴활동 및 청렴성과 자료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- 평가기준: 2개의 평가항목과 8개의 평가지표

평가항목	평가 지 표
청렴활동 (42.9%)	▪ 계획수립의 적정성(비계량, 2점)
	▪ 반부패 우수사례 도입 추진실적(계량, 5점)
	▪ 지시사항 이행여부(계량, 4점)
	▪ T/F 팀 회의 등 활동의 적정성(계량, 3점)
	▪ 자체 홍보 활동의 효율성(비계량, 4점)
청렴성과 (57.1%)	▪ 기관별 1인당 평균 청렴마일리지(계량, 6점)
	▪ 부패유발요인 제거·개선 노력도(계량, 6점)
	▪ 청렴교육 이수실적(계량, 5점)

※ 청렴마일리지는 감사정보시스템의 마일리지 등록점수로 평가

- 추진일정: '15. 12월

2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

◆ 정책 수립과 집행 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 강화

⇒ 업무추진비 공개, 수의계약 현황 공개, 감사결과, 반부패 청렴 자료, 청렴 옴부즈만 운영,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, 제안서 심사·평가위원 선정

업무추진비 공개

- 공개대상
 - 본청: 청장, 차장, 국장, 감사담당관
 - 소속기관: 통계교육원장, 통계개발원장, 지방통계청장
- 공개내용: 사용총액, (건별) 사용일자·사용내역·사용금액
- 공개장소
 - 청장, 차장, 국장, 감사담당관 : 통계청 홈페이지(청렴자료공개→업무추진비)
 - 소속기관장 : 소속기관 홈페이지
 - 통계교육원 홈페이지(교육원 소개→공지사항)
 - 통계개발원 홈페이지(정보공개→행정정보공개→정보공개자료)
 - 각 지방통계청 홈페이지(정부3.0정보공개→정보공개자료)
- 공개주기 및 공개시기: 매월, 익월15일까지

수의계약 현황 공개

- 공개목적: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을 제고, 정보공개 활성화
- 공개 개요
 - 공개기준 금액: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수의계약
- 공개위치: 통계청 홈페이지(청렴자료공개→수의계약현황)
- 공개내용: 계약건명, 계약일자, 계약상대자(업체명), 계약금액, 사업담당부서
- 공개시기: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내
- 공개주기: 월별

자체감사 결과 공개

- 공개목적: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
- 공개위치: 통계청 홈페이지(청렴자료공개→감사결과)
- 공개내용: 자체감사 결과, 복무감사
- 공개시기: 결과 보고 후 즉시

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

- 공개목적: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
- 공개위치: 통계청 홈페이지(청렴자료공개→감사결과)
- 공개내용: 반부패 시책관련 내부보고서, 제도 규정, 수범사례 등
- 공개시기: 발생 즉시

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

- 운영목적: 우리 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·관행·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
- 운영근거: 통계청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(통계청 훈령 제298호, 2013.7.1.)
- 구성: 청렴옴부즈만(5명) 및 감사자문위원회 외부위원(4명)
- 임기: 2년(1차 연임 가능)
- 기능 및 역할

- 통계청이 행하는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 등 부패통제에 관한 시정 요구 및 권고, 감사요구
- 통계조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
- 반부패청렴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
- 통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
-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자문
- 그 밖에 통계조사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

- 추진일정
- 수 시

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강화

- 점검목적
 - 클린카드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법·부당한 카드 사용에 대한 점검 및 예방 강화
 - 카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비리 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
- 점검 개요
 - 점검대상: 본청(6개 국, 운영지원과) 및 소속기관(2개 원, 5개 지방청)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(d-brain 파일)
 - 점검사항: 제한업종에 사용 여부, 근무시간외(휴일포함) 결제 여부, 같은 업체(소)에 연속 결제 여부, 기타 불합리한 결제(예산의 목적 외 사용, 낭비적 요소 등 불합리 사례 등)
 - 점검주기: 매분기
- 자료제출
 - 제출 대상 부서: 국, 원, 운영지원과, 지방통계청
 - 국, 원별로 주무과 회계담당이 감사담당관실로 제출
 - 지방청(본부, 사무소)은 지방청 감사팀으로 제출, 감사팀에서 취합된 내용을 1차 모니터링 후 감사담당관실로 제출
 - 제출일자: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실로 제출
 - 제출자료 및 방법: d-brain에서 다운로드한 엑셀파일 원본을 공문으로 제출
- 결과활용
 - 모니터링 결과 중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확인절차를 거쳐 수정
 - 반복적인 착오사항은 정리하여 전 부서에 전파
 - 규정위반 내용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조치
- 추진일정: 매분기

제안서 심사·평가위원 선정

- 운영목적: 우리청이 발주하는 「협상에 의한 계약」 체결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·평가업무 집행으로 계약업무의 대내·외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
- 운영근거: 『통계청 제안서 심사·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』 (통계청훈령 제375호, 2014.12.3.)
- 운영시기: '08. 9월 이후
- 위원선정 요청시기: 소관 부서는 심사·평가 3~5일전에 감사담당관실로 요청
- 제안서 심사·평가위원 구성 기준

예산액 위원	5천만원 초과 ~ 1억원 미만	1억 ~ 5억원 미만	5억 ~ 10억원 미만	10억원 이상
외부의원	3명	4명	4명	6명
내부의원	과장급 1명	과장급 1명	국장급 1명	국장급 1명
	사무관급 1명	사무관(서기관)급 2명	과장급 2명	과장급 2명

※ 정보화 사업 제안서 평가시 사업예산 2억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

- 추진일정: 연중

3

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개선

◆ 조직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·개선·점검하기 위한 기관의 제도적 노력 강화

⇒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, 부패영향평가 실시,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,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

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

- 추진배경: 부패방지를 위해 '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', '관행 및 법령' 등을 발굴하여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제 이행
- 추진근거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(법률 제11690호, 2013.3.23)」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
- 2014년도 권고과제 이행 현황

<권고과제>

▪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	이행중
▪ 법인(클린)카드 및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	이행완료
▪ 비위공직자 징계부과금 실효성 제고방안	이행중

- 이행중인 과제 조치기한
 - 「법인(클린)카드 및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」 : '15. 1월
 - 「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」 : '15. 6월
 - 「비위공직자 징계부과금 실효성 제고 방안」 : '16. 4월
- 추진일정 : 연중

부패영향평가 실시

- 추진목적: 현행법령, 제·개정 법령, 행정규칙 등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알선·청탁 소지 차단
- 실시근거: 「법무업무 처리규정(통계청훈령 제350호, 2014.3.26.)」 제4조의2(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)
- 실시대상: 통계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 126종(“15.1.1.기준)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
 - 법령(13종): 법률(1), 대통령령(3), 부령(8), 대통령훈령(1)
 - 행정규칙(113종)
 - 훈령(65종): 본청(47), 교육원(3), 개발원(7), 지방청(8)
 - 예규(48종): 본청(26), 교육원(12), 개발원(3), 지방청(7)
- 실시방법: 법령 및 행정규칙 제·개정(안)에 대해 부패와의 연관성이 있는 조문을 발굴하여 개선

구분	평가 의뢰	평가 실시 및 개선권고	개선권고 의견반영	관련 규정
· 법령	통계청 (창조행정담당관실)	국민권익위원회 (부패영향분석과)	통계청 (창조행정담당관실)	통계법,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2종
· 행정규칙	통계청 (창조행정담당관실 또는 해당 부서)	통계청 (감사담당관실)	통계청 (해당 부서)	통계청 자체감사규정 등 83종

- 평가기준
 - 준수 의 용이성: 준수부담의 적정성, 제재규정의 적정성, 특혜발생 가능성
 - 집행기준의 적정성: 제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, 위임·위탁기준의 적정성,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
 - 행정절차의 투명성: 접근성과 공개성, 예측가능성, 이해충돌 가능성
- 추진일정: 연중(행정규칙 제·개정시 또는 필요시)

반부패 자율시책 추진

- 추진목적: 청렴성 향상을 위해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해 추진한 시책 평가
 - ☞ 기존의 ‘제도개선’, ‘부패영향평가’, ‘행동강령 운영’, ‘청렴교육 실시’ 등 부패방지와 관련되는 시책 모두 포함
- 평가기준

구 분
▪ 자율시책 제출기관 기본점수(10점)
▪ 부패 연관성(20점): 제출 사례가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
▪ 제도화 여부(25점): 규정 제·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
▪ 부패영향평가 평가 실시 여부(5점)
▪ 효과성(30점): 구체적 성과 제시 여부,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
▪ 창의성(10점):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

- 추진일정: 연중

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

- 추진목적: 예산집행, 각종 재정지원 분야 등에서 예산낭비나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부패 사각지대 집중 개선
- 주요 부패취약분야
 - 국가재정(보조금, 연구비 등) 누수 부패
 -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
 - 준공공영역(공무수행 민간인, 전문자격사, 공익법인 등)의 부패친화적 관행
 - 고질적 비리 발생
- 평가기준

구 분
▪ 개선대책 제출기관 기본점수(10점)
▪ 부패취약분야 연관성(20점): 해당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인지 여부
▪ 제도화 여부(30점): 규정 제·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
▪ 효과성(30점):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
▪ 창의성(10점):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

- 추진일정: 연중

4 청렴의식 문화 개선

◆ 반부패 노력에 대한 기관장 및 고위직의 관심과 의지, 조직구성원의 의식 개선 노력 강화

⇒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,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, 청렴교육 실시, 내부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, 타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

공공기관 청렴도 측정

○ 측정 목적

- 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
-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공정성·투명성 향상

○ 조사대상

- 외부청렴도: 1년간('14.7.1~'15.6.30)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접촉경험이 있는 국민(민원인/공직자)
 - ☞ 우리청 대상업무 : 계약 및 관리(세부업무 : 구매, 용역, 공사)
- 내부청렴도: '15.6.30. 현재 측정대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
- 정책고객평가: 해당기관 관련 전문가, 업무관계자 등

○ 평가방법과 프로세스

- 전화조사, 이메일 조사,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문조사
 - ※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전화조사, 이메일, 스마트폰을 이용
 - 내부청렴도는 이메일, 스마트폰 조사 원칙
- 발생한 부패사건의 금액 및 부패행위자의 직위 등을 점수화하여 부패행위 양태에 따라 외부 또는 내부 청렴도에 각각 감점
-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
 -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와 표본오염행위 현지점검 적발 사항을 점수화하여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반영

○ 측정 산식

$$\boxed{\text{종합 청렴도}} = \boxed{\text{외부청렴도 (60.1\%)}} + \boxed{\text{내부청렴도 (25.0\%)}} + \boxed{\text{정책고객평가 (14.9\%)}} - \boxed{\text{감점*}}$$

* (감점) 부패사건 발생현황, 신뢰도 저해행위

○ 측정 체계

	외부청렴도	내부청렴도	정책고객평가
▪ 조사대상	민원인, 공직자	소속 직원	전문가, 업무관계자
▪ 조사방법	전화, 이메일, 스마트폰	E이메일, 스마트폰	전화, 이메일, 스마트폰
▪ 조사항목 ('14년도)	◦ 17개 항목	◦ 33개 항목	◦ 14개 항목
▪ 측정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개 업무별 최소 50개 표본 이상 - '14.7.1.~'15.6.30. 기간 동안 계약(구매, 용역, 공사) 업체 - 계약금액 기준 상위 20건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(상위 5순위까지)도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본 청 : 약 500명 ◦ 지방청 : 약 1,000명 - '15.6.30일 현재 해당기관 에서 근무하는 있는 소속 직원 ※ (제외) 기관장, 고위 공무원, 일용직, 1년이하 근무경력자 ※ (포함) 비정규직 1년 이상 근무경력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문가 : 자문 교수, 관련 학회, 해당기관의 출입기자, 소속상임위 국회보좌관, 퇴직 공직자 등 ◦ 업무관계자 : 산하단체, 협회 등 관련자

○ 추진 일정

- '15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·통보(권익위) : '15. 6월
-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: '15. 7월
-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 : '15. 7월~11월
- 청렴도 측정 실시 : '15. 7월~11월
- 측정결과 발표('14년도 : 12.3일 언론보도) : '15.12월

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

- 평가목적: 고위직 개인의 행태와 함께 조직 환경과 업무 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하여 향후 공직수행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
 - ※ 평가결과 활용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(인사·성과의 기초자료 등)
- 평가대상기간: 2014. 6. 1 ~ 2015. 5. 31(1년간)
- 평가대상: 13명(본부 : 국·원장 8명, 지방통계청장 : 5명)
- 평가방법
 - 평가대상 고위직에 대해 개인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E-mail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기본점수 산출
 - 설문 결과에 객관적 자료(계량지표)를 점수화하여 감점으로 반영
- 평가단 구성 : 내부직원만으로 구성
 - 평가단은 상위평가단, 동료평가단, 하위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
 - 상위평가단과 동료평가단은 개인 청렴도 평가에만 참여
 - 하위평가단은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,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, 개인별 청렴도 평가 등 3단계 평가 모두 참여
 -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명부 구성: 진단 대상 특정 고위직위에 속해 있는 하위직원 모두가 포함
 - 개인별 청렴도 평가단 명부 구성: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및 공통부서(기획, 인사, 예산, 조직, 감사, 홍보, 비서) 직원으로 50명 이상의 Pool 구성 후 20명을 임의추출
- 평가내용
 - 설문평가("14년도): 내부설문 19항목
 - 계량지표평가: 준법성 관련 5개* 항목(감점)
 - * ① 세금 체납 여부, ② 교통법규 위반 여부, ③ 징계를 받은 경험, ④ 재산신고 심사결과, ⑤ 청렴교육 이수(또는 반부패 활동실적)
 - 자가진단 지표: 체크리스트(○, X 척도의 30개 항목)

- 평가결과
 - 본인 및 기관장에게 통보하고, 필요에 따라 인사·성과관리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
 - '부패방지 시책평가'에 반영(평가지표)
- 평가수행
 - 주관부서: 감사담당관실
 - 평가업체: 외부업체 평가 의뢰
 - 소요예산: 5,000천원 내외
- 추진일정: '15. 6월
 - 2014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계획(안) 수립 : '15. 5월
 - 청렴도 평가 실시 : '15. 6월
 - 청렴도 평가 결과 보고 및 제출(권익위) : '15. 7월

청렴교육 실시

- 교육목적: 반부패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생활화로 청렴마인드 제고
 - 교육대상: 통계청 소속 공무원
 - 교육이수시간: 연 5시간 이상(의무화)
 - 교육이수방법: 집합교육, 사이버교육 등
 - 교육내용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반드시 포함
- ① 집합교육
- ◆ 반부패 청렴·행동강령 교육
 - 교육일자 및 시간: 상반기(2.5시간), 하반기(2.5시간)
 - 교육대상: 본청·교육원·개발원 전 직원
 - 교육장소: 후생동 대강당 또는 2층 대회의장
 - 강 사: 외부청렴강사 초빙

◆ **찾아가는 청렴교육**

- 교육일자 및 시간: 7월~8월, 2시간
- 교육대상: 지방청 전 직원(권역별로 실시)
- 교육장소: 지방청 강당 및 사무소 회의실
- 강 사: 감사담당관 또는 청렴업무담당
- 실시방법: 5개청별 순회교육

◆ **부서장급 맞춤형 교육**

- 교육일자 및 시간: 8월, 4시간
- 교육대상: 지방사무소장, 지방청 감사팀
- 교육장소: 통계센터 국제회의실
- 강 사: 감사담당관실 사무관
- 실시방법: 감사, 공직기강, 일상감사 등과 합동 실시

◆ **고위공직자 청렴교육**

- 교육일자 및 시간: 8월, 2시간
- 교육대상 및 장소: 통계청 고위공직자 13명, 통계교육원

◆ **신규임용자 청렴교육**

- 교육일자 및 시간: 수요일발생시, 2시간
- 교육대상: 통계청 신규 임용자
- 교육장소: 통계교육원
- 강사: 감사담당관 또는 청렴업무담당

② **사이버 교육**

◆ **(통계교육원) 사이버 청렴교육**

- 운영기간: '15년 9회 실시(1월, 8월, 12월 제외)
- 1회당 교육기간(20일), 교육시간(15시간), 차시(15차시)
- 교육대상: 통계청 소속 공무원 및 비공무원

< 통계교육원 사이버 청렴교육(e러닝 센터) >

번호	과정명	교육 대상	등록 정원	교육 시간	신청기간	학습기간
1	사이버 청렴교육 (15-1기)	통계청 (공무원, 비공무원)	400명	15시간	1.27.~1.29.	'15.2.1~'15.2.23
2	사이버 청렴교육 (15-2기)		300명		2.24.~2.26.	'15.3.1~'15.3.20
3	사이버 청렴교육 (15-3기)				3.25.~3.27.	'15.4.1~'15.4.20
4	사이버 청렴교육 (15-4기)				4.27.~4.29.	'15.5.1~'15.5.20
5	사이버 청렴교육 (15-5기)				5.26.~8.28.	'15.6.1~'15.6.23
6	사이버 청렴교육 (15-6기)				6.25.~6.29.	'15.7.1~'15.7.21
7	사이버 청렴교육 (15-7기)				8.25.~8.27.	'15.9.1~'15.9.22
8	사이버 청렴교육 (15-8기)				9.23.~9.25.	'15.10.1~'15.10.20
9	사이버 청렴교육 (15-9기)				10.26.~10.28.	'15.11.1~'15.11.20

◆ (청렴연수원) 청렴 사이버교육

- 교육 사이트: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(<http://acti.coti.go.kr>)

교육기관	청렴교육 사이버과정	교육시간	교육인원
청렴연수원	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	15	1,000
	사이버 청렴교육	15	1,000
	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	5	1,000
	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	8	1,000
	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	7	1,000
	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	10	1,000
	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가치	5	1,000
	독립 운동가를 통해 본 나라사랑과 국가관	7	1,000

③ (기타) 청렴교육

- 청 및 지방청 단위로 청렴관련 교육을 수시로 실시
- 자체감사담당자 회의 시 청렴교육
 - * 지방청 감사팀
- 지방청: 자체 청렴교육(지방청 워크숍·청렴동영상 시청 등)
-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: 집합교육(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)

내부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

- 실시목적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우수기관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도입으로 내부청렴도 향상 제고
- 실시방법
 - 대상기관
 - 광역자치단체(부산광역시): 2014년 내부청렴도 1위
 - 공직유관단체(한국남부발전): 2012년 이후 청렴도 1등급 기관
- 추진일정: 3월 중

타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

- 실시목적: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과 미흡기관간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청렴 수준 제고 노력을 지원
- 실시방법
 - 실시기간 중 실무자간 업무회의를 중심으로 상호 기관 방문
 - 반부패·청렴업무 수행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우수자료 공유, 업무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
- 활동방법: '14년도 평가결과 1등급 기관(통계청)은 평가결과 4등급·5등급 기관 또는 신규 대상기관을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
 - ※ 2014년도 교류: 통계청(1등급) vs. 강원대학교(4등급)&새만금개발청(신규)
- 추진일정: 필요시 수시

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

◆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,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정도

⇒ 공무원 행동강령 인지도 평가, 행동강령 자체점검, 외부강의 신고 운영, 청렴서약 실시, 청렴퀴즈 실시, 청렴안내문 배포. 청렴서신 발송, 청렴 으뜸소장 선정, 공익 및 복지·보조금 홍보

공무원행동강령 인지도 평가

- 평가목적: 공무원행동강령은 모든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심도 제고
- 평가대상: 통계청 공무원
- 평가방법: 온라인(UBIS) 설문조사시스템 활용
- 평가문항: 총 20문항(4지선다형 15문항, 정오형 5문제)
※(출제) 「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풀」에서 선택 출제
- 시상: 80점이상(3점), 60점이상(2점) 60점미만은 0점의 청렴마일리지 부여
- 추진일정: '14. 5월

행동강령 자체점검

- 관행적 부조리(출장, 시간외수당, 워크숍 등) 예방을 위한 지도·점검 강화
- 취약시기 점검, 종합감사 시 관행적 부조리 사항 집중 점검

<주요사례 예시>

-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(허위 출장 등)
- 공용물의 사적사용·수익의 금지(공용차량 사적 이용 등)
- 금품을 받거나 주는 행위
- 외부강의·회의 신고 및 출장 처리 사항
- 인허가, 계약 등과 관련 긍정적 검토 지시 등 무언의 부당한 압력

- ※ 취약시기 : ● 연말연시 ● 설전후 ● 하계휴가철 ● 추석전후
● vip해외순방 ● 기관장 부재시 등

- 추진일정: 연중(8회 이상 실시)

외부강의 신고 운영

- 신고근거: 「통계청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1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
- 신고 시스템:
업무포털(UBIS)→ e-사람 → 복무→ 근무상황→ 외부강의 신고 및 변경
- 외부강의 대가: 통계청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*(수령액)

* <외부강의·강연 대가기준(통계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3항 관련)>

(단위: 천원/1시간)

구분	청장	4급 이상	5급 이하	비고
상한액	300	230	120	원고료·여비
1시간 초과	200	120	100	는 미포함

- 추진일정: 연중
 - 외부강의 신고 안내(UBIS 게시판): '15.2월
 - 2014년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(제로미시스템): '15.2월
 - 외부강의 사전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실시: '15년 하반기

청렴서약 실시

- 실시목적: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와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
- 실시근거: 청렴서약 의무화(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제30조)

제30조(청렴서약) 고위공무원(고위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장 포함), 각 부서의 장, 신규 채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시기는 매년 1분기말까지이며, 2분기 이후 고위공무원 진입, 부서장 발령 및 신규채용 시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서약대상: 고위공무원, 각 부서장 및 신규채용자
 - ※ 2015년도 서약대상 추가: 계약관리 관련과 및 사업집행액 2억 이상 사업부서의 담당사무관 및 담당자(계약관리 청렴도 제공 방안 관련)
- 서약방법: 반부패 청렴서약서(훈령 별지 제11호서식)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(감사담당관)에게 제출
- 제출시기: 매년 1분기말까지 제출, 2분기이후 진입·발령·채용, 업무변경 등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제출(지방통계청: 감사팀에서 자체 보관 관리)
- 추진일정: '15 3월

청렴퀴즈 실시

- 실시목적: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한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제고
- 실시대상: 통계청 소속 공무원 및 비공무원
- 실시방법: 온라인(UBIS) 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자발적 참여
- 출제방법: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·청렴 자료 및 「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」 범위에서 출제
- 시상: ① 참가자 중 만점자를 대상으로 20명을 선정하여 상품권 지급
 ② 60점이상 득점자 전원에게 청렴마일리지 3점 부여
- 추진일정: '15. 9월

청렴안내문 배포

- 실시목적
 - 전년도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계약 및 관리 업무의 경우 금품·향응·편의에 대하여 간접경험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내부직원의 청렴의식 고취뿐 아니라 계약업체의 의식 제고 필요
 - 계약업체에 대한 청렴의식을 고취시켜 외부로부터 청렴활동 강화 필요
- 실시방법: 우리 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에게 청렴안내문을 배포
- 실시대상: 2014년 계약업체(물품·용역)
- 실시방법: 청렴안내문을 우편 또는 E-mail로 송부
- 추진일정: '15. 2월(감사담당관실), 운영지원과(5월)

청렴 으뜸 사무소장 선정

- 평가목적
 - 일선사무소 기관장의 관심 유도로 청렴문화 확산 및 자율적인 반부패 개선 노력 유도로 “청렴도 최우수 기관” 이미지 제고
- 평가대상: 49개 지방사무소장
- 평가기간: '14.12.1. ~ '15. 11.30.
- 평가방법: 4개 항목을 집계하여 순위 부여

부서장청렴마일리지(20%)
부서원청렴마일리지(10%)

공직복무 및 클린카드
점검 시 지적사항(40%)

외부사정기관
통보 건수(20%)

청렴교육
이수실적(10%)

- 포상대상자의 두배수를 선정하여 심의 위원회(감사담당관실 사무관, 지방청 감사팀장)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확정
- 포상내용
 - 으뜸사무소장(1명): 청장 표창 및 포상금, 청렴 유적지 탐방
 - 우수사무소장(2명): 포상금, 청렴유적지 탐방
- 포상시기: 2015년 12월

공익 및 복지·보조금 신고 홍보

- 홍보목적: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
 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
- 홍보방법: 기관 보유 전광판을 통한 영상물 표출, 리플렛 배부
- 홍보내용: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
- 표출형태 및 시기: 3D 그래픽, 공문 요청시
- 결과제출: 통계교육원 및 각 지방청 감사팀은 전광판 표출 관련 자료
 (표출 횟수 및 증거사진)를 감사담당관실로 제출(요청 시)

<보유 전광판 현황('15.2.1일 기준)>

- 통계교육원 (1) : 대전(통계센터)
- 경인지방통계청(2) : 성남, 평택
- 동북지방통계청(2) : 대구, 경산, 춘천(합동청사)
- 호남지방통계청(1) : 제주(합동청사)
- 동남지방통계청(2) : 부산, 진주
- 충청지방통계청(1) : 충주, 천안

<붙임 1>

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(2015년도)

	평가영역	평가부문	단위과제	비고
			* 괄호()안은 정책 비중에 따라 책정한 가중치임	
부 패 방 지 시 책 평 가	A. 반부패 의지·노력 (0.90)	① 반부패 인프라 구축 (0.15)	1-1.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(0.20, 기초자치단체·공직유관단체 0.20)	
			1-2. 자체감사 활성화 (0.175, 기초자치단체·공직유관단체 0.27)	
			1-3. 부패처벌 강화 (0.325, 기초자치단체·공직유관단체 0.53)	
			1-4.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(0.30) (공직유관단체 가점지표)	
		② 정책 투명성·신뢰성 제고 (0.15)	2-1.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(0.40)	설문평가
			2-2.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(0.30)	
			2-3.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(0.30)	
		③ 부패유발요인 제거·개선 (0.30)	3-1.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(0.30)	
			3-2.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(0.30)	
			3-3.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(0.20)	
			3-4.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(0.20)	
		④ 공직사회 청렴의식·문화 개선 (0.225)	4-1.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·노력(0.20)	설문평가
	4-2. 청렴교육 활성화(0.30)			
	4-3.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(0.50)			
	⑤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(0.175)	5-1.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(0.40)		
5-2.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(0.40)				
5-3.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 활성화(0.20)				
B. 부패방지 성과 (0.10)	① 청렴도 개선 (0.30)	1. 청렴도 개선(100)	설문평가	
	② 부패공직자 발생 (0.70)	1. 부패사건 발생 예방(100)	통계자료	
C.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	감점 지표	1.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	총점의 10%까지	

<붙임 2>

자율적 제도개선과제 관련 양식

반부패 자율시책 추진

<작성 서식 1> 반부패 자율시책을 법령, 행정규칙, 조례, 규칙, 사규 등으로 규정화한 경우

1. 사례명

(기관명, 담당자, 연락처)

■ 규정명 :

■ 평가대상 조문 1 ■

평가대상 조문 기재

- ※ 제정안일 경우에도 전체 조문을 기재하지 말고 개선이 필요한 조문만 작성할 것
- ※ 관련 조문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'관련 조문 없음'으로 표시할 것

□ 평가항목

※ 다음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(중복기재 가능)

- 준수부담의 적정성, 제재규정의 적정성, 특혜발생 가능성, 재량 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, 위임·위탁기준의 적정성,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, 접근성과 공개성, 예측가능성, 이해충돌가능성 등

○ (작성 예시) 준수부담의 적정성 및 제재규정의 적정성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※ 관련 부패사례(유사 부패사례), 통계자료 등을 통해 평가대상 조문 관련 현황·문제점을 상세히 기술

○

검토결과 : 개선권고

※ 개선권고의 취지·내용을 간략히 기술

○

【예시】

(제)개정안	개선권고안

제·개정 완료 여부

제·개정 완료 여부	시행일	최종 반영 조문
※ O, X로 표시		※ 관련 내용이 반영된 조문명과 조문 기재

※ 개선안이 실제 반영된 경우 최종 공포된 조문을 작성
 ※ 조례규칙심의회 통과중인 것은 'X'(미반영)으로 표시

<작성 서식 2> 규정외에 계획, 지침 등을 통해 반부패 자율시책을 추진한 경우

1. 사례명

(기관명, 담당자, 연락처)

추진 배경 및 문제점

- 사례 추진의 배경 및 문제점

내용

-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안 기재

추진실적(활동)

- 그간 추진실적 및 활동(15년 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)

파급효과(성과)

-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

기타

- 기타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언론 보도사항

추진 근거

근거 종료	문서명	시행일자	문서번호
※계획, 지침 등으로 표시			

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

1. 사 례 명

(기관명, 담당자, 연락처)

추진 배경 및 문제점

- 사례 추진의 배경 및 문제점

내용

-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안 기재

추진실적(활동)

- 그간 추진실적 및 활동('13년 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)

파급효과(성과)

-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

기타

- 기타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언론 보도사항

추진 근거

근거 종료	문서명	시행일자	문서번호
※행정규칙, 조례, 규칙, 계획, 지침 등으로 표시			